

1. 개정 이유

유럽연합(EU)과 영국이 기존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철강관세 할당(Tariff Rate Quotas, TRQ)을 '26.7.1일 시행함에 따라 대한민국에 배정된 관세할당품목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EU와 영국의 TRQ 물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당 조치에 적용되는 품목을 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하고자, 「별표2」의 수출 제한품목을 개정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별표 2] 수출제한품목 개정 자료

수출입공고 일부개정고시안

수출입공고 별표 [별표 2] 수출제한품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H S	품 목	수 출 요 령
2505	천연모래(착색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6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를 제외한다)	다음의 것은 한국골재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규산분(SiO_2)이 90% 이하의 것
10	규 사	
90	기 타	
2517	자갈·왕자갈·쇄석(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 또는 기타 벨러스트 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싱글과 플린트(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슬랙·드로스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매카담(이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타르 매카담 및 제 2515호 또는 제2516호의 암석을 입상·파편상·분상으로 한 것(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다음의 것은 승인없이 수출할 수 있음. ① 구석, 싱글과 플린트 2. 기타의 것은 한국골재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10	자갈·왕자갈·쇄석·싱글과 플린트	
41	대리석의 것	
7206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제7203호의 철은 제외한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0	잉곳(ingot)	
90	기 타	
7207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	

H S	품 목	수 출 요 령
7208	11 황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폭이 두께의 두 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2 그 밖의 황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	
	19 기타	
	2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이상인 것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H S	품 목	수 출 요 령
10	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고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25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26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27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36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37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38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39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40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51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2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53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54	기타	
90	기타	

H S	품 목	수 출 요 령
7209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15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인 것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6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17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18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25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인 것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26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27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28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90	기타	
721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11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미국 또는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2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H S	품 목	수 출 요 령
7211	20 납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합석판을 포함한다)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30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41 물결 모양의 것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49 기타	
	50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61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69 기타	
	70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90 기타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H S	품 목	수 출 요 령
7212	13 4면을 압연한 것이나 크로스드박스 패스(closed box pass)로 한 것(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코일 모양인 것과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4 기타(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9 기타	
	23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미만인 것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29 기타	
	90 기타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20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3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40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5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H S	품 목	수 출 요 령
60	클래드(clad)한 것	미국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7213	철이나 비합금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20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91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4 밀리미터 미만인 것	
99	기타	
7214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단조(鍛造)·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열간(熱間)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10	단조(鍛造)한 것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2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	
30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91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99	기타	
7215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	

H S	품 목	수 출 요 령
7216	10 쾌삭강(快削鋼)의 것[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50 기타[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 기타	
	철이나 비합금강의 형강(形鋼)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0 유(U)형강·아이(I)형강·에이치(H)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21 엘(L)형강	
	22 티(T)형강	
	31 유(U)형강	
	32 아이(I)형강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33 에이치(H)형강	
	40 엘(L)형강이나 티(T)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0 그 밖의 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99 기타	
7217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	

H	S	품 목	수 출 요 령
7218	10	도금하거나 도포하지 않은 것(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20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30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90	기타	
		스테인리스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	
	10	잉곳(ingot)과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91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99	기타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1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7219	12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13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14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21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22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23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24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H S	품 목	수 출 요 령
	31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32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33 두께가 1밀리미터를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34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35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90 기타	
7220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11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2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20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90 기타	
7221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00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7222	스테인리스강의 그 밖의 봉과 스테인리스강의 형강(形鋼)	

H	S	품 목	수 출 요 령
	11	횡단면이 원형인 것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9	기타	
	20	붕[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0	그 밖의 붕	
	40	형강(形鋼)	
7223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00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7224		그 밖의 합금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의 합금강의 반제품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0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	
	90	기타	
7225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1	방향성(方向性)인 것	
	19	기타	
	30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0	기타[코일 모양은 제외하고,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H S	품 목	수 출 요 령
50	기타[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91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92	그 밖의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99	기타	
7226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11	방향성(方向性)인 것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9	기타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20	고속도강의 것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91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92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99	기타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H S	품 목	수 출 요 령
7227	그 밖의 합금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10	고속도강의 것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20	실리코망간강의 것	
90	기타	
7228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 그 밖의 합금강의 형강(形鋼), 합금강이나 비합금강의 중공(中空)드릴봉	
10	고속도강의 봉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20	실리코망간강의 봉	
30	그 밖의 봉[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0	그 밖의 봉[단조(鍛造)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50	그 밖의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0	그 밖의 봉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70	형강(形鋼)	
80	중공(中空)드릴봉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7229	그 밖의 합금강의 선(線)	
20	실리코망간강의 것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90	기타	

H S	품 목	수 출 요 령
7301	철강으로 만든 널말뚝(sheet piling) (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조립된 것 인지에 상관없다)과 용접된 형강(形鋼)	
10	널말뚝(sheet piling)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7302	철강으로 만든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 로의 건설재료[레일(rail)·첵레일(chec k-rail)과 랙레일(rack rail)·스위치 블 레이드(switch blade)·교차구류(crossi ng frog)·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받침목(크 로스타이)·이음매판(fish-plate)·좌철 (座鐵)·좌철(座鐵)썰기·밑판(sole plat e)(베이스플레이트)·레일클립·받침판 (bedplate)·격재(tie)와 레일의 접속이 나 고착에 전용되는 그 밖의 재료로 한정한다]	
10	레일(rail)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40	이음매판(fish-plate)과 받침판(sole p late)	
90	기타	
7304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 (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무 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	
11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9	기타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22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드릴파이프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H S	품 목	수 출 요 령
7305	23 그 밖의 드릴파이프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24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29 기타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31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39 기타	
	41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49 기타	
	51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59 기타	
	90 기타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예: 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세로 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submerged arc) 용접한 것	미국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2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H S	품 목	수 출 요 령
7306	19 기타	미국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20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	
	31 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	
	39 기타	
	90 기타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예: 오픈심(open seam)·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	
	11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9 기타	
	21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29 기타	
	3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1 횡단면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인 것	
	69 그 밖의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90 기타	